

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1. 개정사유

- 지방자치 경쟁력 제고와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규제사무 정비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제4조(자인서 징구) 규정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므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자인서 징구(제4조) -삭제
 - 관계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·조사하였을 때에는 “별지 제5호 서식”에 의하여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입하고 관계 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.

3. 검토의견

-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대상자에 대하여 조례 제4조(자인서 징구)에서 “관계공무원이 위법 사실을 확인·조사하였을 때에는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나, 조례 제5조(청문)에서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므로 자인서징구는 주민에게 진술 강요 및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, 조례안 제4조(자인서 징구) 삭제는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민편익과 자치단체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을 긍정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